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9 선고 2019가단1012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6. 14.

판결 선고 2019. 8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24,745,180원 및 그 중 200,000,000원에 대하여 2008. 12. 3.부터 2009. 4. 29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병태

별지